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4-02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5누57538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
원고, 항소인	주식회사 A [redacted]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서울행정법원 2015. 8. 20. 선고 2015구합50535 판결
변 론 종 결	2019. 1. 31.
판 결 선 고	2019. 1. 31.

주 문

1.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소를 각하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
  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. 10. 10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, 지방교육세,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취득세 359,071,430원, 지방교육세 32,866,730원, 농어촌특별세 16,433,36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.
2.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.
3. 소송 총비용 중 30%는 원고가 부담하고, 70%는 피고가 부담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4-02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4. 10. 10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94,489,130원, 지방교육세 54,415,120원, 농어촌특별세 27,207,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○ 3쪽 밑에서 2줄 위에 아래의 내용은 추가한다.

『피고는 2018. 12. 4.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다.』

2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

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,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(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).

직권으로 살피건대, 피고가 원고에게 먼저 당초 처분 중 이 사건 처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고, 그 후 이 사건 처분까지 전부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.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.

3. 결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4-02

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,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.

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문용선

판사 문주형

판사 이수영